

5. 不實工事防止 및 建築物 安全確保對策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 1995. 7. 13

부실공사방지 및 안전확보 대책

1. 추진 개요

- 건설공사는 여러단계에 걸쳐 복잡한 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각각의 참여주체가 제대로 해 내야지만 견실시공과 안전확보가 가능
 - 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설계
 -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되
 - 엄격한 감리에 의해 규정대로 시공케 하고
 - 철저한 준공검사를 통해 인수받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
- 92. 7월 신행주대교 사고이후,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
 - 공공공사 부문에서는 설계·입찰·시공·감리·준공·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제도개선 추진
 - 민간건축부문도 번잡한 행정절차와 비현실적인 규제는 완화해온 반면, 부실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는 강화
 - 지금까지 7개의 법률과 7개의 시행령을 제·개정하였으며, 현재 3개의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중
- 지속적인 제도보완에 따라, 제도는 어느정도 정비되어 있으나, 이와같은 제도가 일선기관과 공사현장에는 아직 확고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

2. 제도개선 추진상황

설계단계

■ 충실한 설계를 위하여 설계감리제 도입(95. 7)

- 설계감리대상 : 국가·지자체·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500m 이상 특수교량, 댐 등 대형·특수토목공사
- 설계감리자 : 해당 전문분야별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3일 이상 보유업체
- 부실 설계감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

■ 건축설계도서의 세부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정·보급(96. 1)

- 설계도서의 종류, 내용, 규격, 작성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중

■ 설계·시공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턴키공사를 활성화

- 대형공사 기본계획 심의시 턴키입찰(설계·시공일괄입찰) 유도
- 턴키입찰에 탈락된 업체에게 설계비 일부보조(대형공사특례구정개정중)

※ 턴키공사 추이 : 8건('90)→47건('94)

■ 구조안전을 위반하여 설계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(95. 1)

-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→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

입찰·계약단계

■ 능력있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기술능력, 시공경험 등을 미리 심사하는 『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』를 도입·시행(93. 7)

- 대상공사 :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(공동주택·관람집회시설 등)
- 선정기준 : 종합평점 60점 이상 업체중 20~30개사
- 배점기준 : 시공경험 30, 재무상태 30, 시공기술 40, 신용도 ±10

■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『최적격낙찰제』를 도입·시행(95. 7)

- 대상공사 : 100억원 이상 공사
 - 심사항목 : 입찰가격, 기술능력, 품질관리능력, 하도급관리계획 등
- 적정한 공사비와 충분한 공기보장
- 공사비산정시 비현실적인 정부노임단가를 폐지하고, 건설협회 등에서 조사한 시장가격으로 대체(95. 1)
 - 94년 상반기 정부노임은 시중노임의 70% 수준에 불과
 - 공사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하던 표준품셈제도를 개선하여,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실적 공사비를 지급하는 적산제도를 도입·시행(96. 1)
 - 혹서(酷暑)나 동절기 등을 감안한 충분한 공기를 주기 위하여 『건설사업 시행절차』를 법정화(95.7)

시공단계

- 부실시공업체·기술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
- 부실시공 및 품질시험·안전점검 미실시 업체 처벌강화(95. 1)
 -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→최고 면허취소
 - 건설업체 대표자·기술자 처벌기준 강화(94. 1)
 -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중대한 부실(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→착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중대한 부실
- 건설업체의 공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기간을 대폭 연장(94. 1)
- 교량·댐·대형건축물 등의 철근콘크리트·철골구조 등 주요 구조부 : 3~5년→최고 10년
 - 대형건축물의 일반구조부·방수 등 전문공사 : 1~3년→최고 5년
- 시공·설계·감리 부실업체의 별점을 누적관리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부실별점제 도입(95. 1)
- 부실별점 대상 : 건설업자, 주택건설업자, 설계 등 용역업자, 감리전문회사, 건설기술자, 감리원

- 부실별점 부여자 : 건교부장관, 발주청, 기타 행정기관의 장
- 부실별점 부여방법 : 행정기관, 건설관련단체의 점검결과→발주청, 행정기관에 통보→
결과확인후 벌점부여→입찰시 불이익

- 공정한 원·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
- 원도급자 입찰시 하도급 업체·공종·금액을 미리 정하여 입찰토록 하는 부대입찰제 확대실시(95. 7)
 - 100억원 이상, 14개공종(교량·댐·고속도로·터널 등)→8개 공종 추가(공동주택, 상 하수도, 관람집회시설 등)
-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(93. 6)
 -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, 수급인의 파산,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 결시→85% 저가낙찰공사 추가
- 원·하도급자간의 긴밀한 협력체계정착을 위하여 하도급 계열화 확대 추진
 - 하도급계열화를 유도하기 위해 PQ심사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
 - 92년 : 134개 일반업체에 18,864 전문업체 등록
 - 95년 : 523개 일반업체에 55,734 전문업체 등록
-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강화(94. 1)
 - 일괄하도급 :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→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
 - 하도급 혀위통지 : 과태료→영업정지

- 시공중인 공사의 부실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본 경우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일정한 공사는 공사보험가입을 의무화(95. 7)
- 대상 : 100억원 이상 주요공사(교량·댐·관람집회시설 등)

감리단계

- 엄격한 시공감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책임감리제 도입(94. 1)
 -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공사(년간 1,300건)에 적용
 - 민간공사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하되 감리자는 시장·군수가 선정

- 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
 - 위법·부실공사시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 부여(94.1)
 -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(95.1)
 - 구조안전위반 감리자 :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→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- 정부투자기관 감리회사 설립 등 감리회사 육성
 - 정부투자기관 감리회사 : 4개공사(주공, 수공, 도공, 토개공)
 - 전국 감리회사 : 226개, 감리원 : 10,143명
 - 감리원 교육강화 : 총 57회, 1만 3천 여명
- 외국감리를 조기에 개방하여 국내업체와의 경쟁 유도(95. 7)
 - 국내업체 수행곤란 공사, 85% 이하 저가낙찰공사→모든 공사
 - 건설교통부장관의 외국감리도입 사전승인제 폐지
 - ※ 국내 활동중인 외국감리업체(5개사) : 맥도날드(영), 이이지사(프), 장대사(일), 지이오사(오), 디이시사(독)

사후관리단계

- 기존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『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』 제정(95. 1)
 - 적용대상(총 11,000개소) : 1종·2종으로 구분
 - 1종시설(2,500개소) : 특수교량·장대터널·대형건축물(21층·5만m² 이상)
 - 2종시설(8,500개소) : 일반교량·제방·대형건축물(16층·3만m² 이상)
 - ※ 이외에도 시설물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법 관리대상으로 지정 가능
 -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
 - 민간관리주체→자치단체장
 - 공공관리주체→주무부처장관
 - ※ 현재 관리주체별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확정

- 안전점검 실시 : 관리주체별로 정기적으로 실시

- 일상점검 : 분기별 1회 이상,
- 정기점검 : 시설별로 1~3년에 1회 이상
- 정밀점검 : 10년 이상된 1종시설은 5년에 1회, 기타시설은 필요한 경우

※ 점검은 자격있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시행

- 사후유지관리실시 :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가 실시

■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해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여부를 조사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(건축법개정, 95. 1)

■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(95. 1)

- 관리주체는 1·2종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제한·사용금지·철거 등 긴급 조치
- 일반건축물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개축·사용금지·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 부여

■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강화(95. 1)

- 하자담보기간 종료 6월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증대한 결함인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
-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후라도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공중에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보수책임 부여

■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육성

-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진단기술 연구·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시설안전기술공단 설립(95. 4)
- 건설기술연구원, 건설안전기술원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(19개) 육성

3. 제도정착을 위한 조치

설계·시공·감리 등 전분야에 걸친 제도개선과 함께 이같은 제도를 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시 현장점검,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벌, 건설인의 의식개혁 등 중점 추진

현장점검

- 전반적인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전국 주요 공사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여러차례 실시
 - 94. 2월 이후 모두 24차례 2,571개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
 - 총 5,060건을 지적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
 - 성수대교사건 이후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실시(94. 10. 22~11. 22)
 - 노후교량 등에 대한 개·보수 실시 및 예산확보(95년 3,553억 원)
 - 부실점검을 위해 건교부산하 5개 국토관리청에 건설관리실 설치
- 신도시아파트에 대하여는 94. 11월부터 점검중에 있으며 일반 노후·불량 아파트에 대하여도 시·도별로 특별관리증(상세내용 별첨)

부실업체 제재

- 부실대책 마련이후 적발된 위법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
 - 최근 3년간 총 506개업체 제재
 - 93년까지는 주로 경제벌인 과징금으로 처분하였으나 94년 이후 보다 과중한 영업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이 대폭 증가

	89년	90	91	92	93	94	95. 6
합계	12개사	18	27	42	143	200	114
면허취소	2	5	3	5	34	46	29
영업정지	0	1	2	4	19	29	21
과징금	10	12	22	33	90	125	64

■ 부실 설계·감리자에 대한 단속·제재도 강화

– 최근 5개년간 부실 건축설계·감리자에 대한 업무정지, 등록취소는 총 4,666회

– 91년 이전 까지는 등록취소가 극히 적었으나 92년 이후 증가

	89년	90	91	92	93	94	95. 6
합계	926개사	1,507	669	980	1,246	1,221	550
업무정지	935	1,505	667	970	1,235	1,212	541
등록취소	1	2	2	10	11	9	9

■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로 건설업계의 준법정신이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선의 현장 종사자들에게 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

의식개혁 운동추진

■ 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자정노력 유도

– 업체자율로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중

• 건설협회, 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건설단체 주관하에 자율점검

– 『견실시공다짐대회』 등 결의대회 개최

• 총6회 2,150명, 「견설인행동현장」 채택

– 건설협회 등에 『윤리위원회』를 구성하여 불량업체 제재

– 공사현장별 성실시공 간판설치 및 공사장 주변 정리운동 전개

■ 현장기능공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책 마련·시행

– 기능공에 대한 현장의식교육 실시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제도 도입

• 관련단체에서 전국 건설현장에 의식교육자료(6종류 6만부) 배포

• 공공훈련기관, 사업내훈련기관 등에서 정신교육 실시(7회 6,600명)

– 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해 포상·자격증 부여 등 사기진작

• 92년 이후 건설협회 주관으로 기능경기대회 개최(3회, 472명)

• 입상자에게 장관 표창 및 기능사 자격증 부여

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 현황 및 계획

'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바닷모래 사용 등으로 인한 신도시아파트 부실문제가 제기되어 안전성을 정확히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신도시아파트 4,160개동 전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

- 점검대상 : 5개 신도시 아파트 4,160개동 및 주차장 1,110개소

구분	계	분당	일산	평촌	산본	증동
계	4,160 (1,110)	1,567 (426)	1,125 (310)	499 (108)	487 (136)	482 (130)
'91까지 건 설	1,235 (335)	558 (190)	148 (44)	220 (39)	175 (54)	134 (28)
'92 이후 착 공	2,925 (755)	1,009 (236)	977 (266)	279 (69)	312 (82)	348 (102)

※ 단위는 동수, ()내는 주차장 수

■ 점검현황 및 결과

-'91년 자재파동 당시 건설중이었던 아파트와 '92년 이후 착공된 아파트로 구분하여 실시

※ '91 레미콘사고와 자재파동 이후, 공동감리단 투입, 순회점검 실시, 입주자 사전점검 제 및 해당시·감리단 합동의 예비사용검사 실시 등 품질관리 대폭 강화

-'91년 당시 건설중이었던 아파트(1,235개동)

- 대한건축학회가 비파괴검사, 시료채취·염분함유량시험 및 균열조사 등 안전점검 중에 있음
- 구조안전에 중요한 콘크리트강도는 기준치 이상으로 조사되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
- 일부 염분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붕괴의 위험은 없으며 장기적으로 내구성 저하의 우려가 있음

- ※ 약 8,000개소 시료채취중 60여개소가 기준치 초과
- '92년이후 착공된 아파트(2,925개동)
- 5개신도시 감리단, 관계공무원 및 업체직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경기도에서 자체점검(22개반 370명)
 - 자체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공동주택 2개동, 주차장 11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1개동과 주차장 8개소는 보수·보강조치하고, 나머지는 현재 진단중임

■ 향후 조치계획

- 9월말경 나올 최종점검결과, 염분초과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
- 경기도가 합동점검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건축학회 수준의 정밀 조사를 실시
-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아파트에 대하여도 수시로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

노후·불량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청주 우암아파트 사고 등을 계기로 93. 12월부터 지자체별로 노후·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
 - 시장·군수가 단지별로 관리책임자 지정
 - 월 1회이상 점검하고,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
 - 위험 공동주택은 보수 및 재건축을 적극 추진
 - 위해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경고판·가설담장 등을 설치
- 그동안 입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험 공동주택이 많이 감소 되었으나, 아직도 상당수 남아있는 실정

	93. 12월	95. 5월	조치실적
보수대상	1,003동(31,867호)	333동(13,941호)	△670동(17,926호)
철거대상	77동(2,656호)	25(738호)	△ 52동(1,919호)

※ 전국 공동주택(95. 1 현재) : 56,614동 333만호

2. 향후 조치계획

-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·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전면재조사를 통하여 특별관리대상을 재조정
-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건축 추진에 거주지 마련에 국민주택기금 적극 지원

향후 추진대책

- ◇ 그동안 나름대로 추진해온 온 각종 부실방지와 안전 확보대책에 불구하고, 이번 사고로 인해, 건설인 모두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
- ◇ 지금까지의 제도보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,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, 기존에 마련된 제도를 일선현장에 토착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
- ◇ 민간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백화점과 같이 다중(多衆)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과 같은 차원에서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나가겠음

1. 민간 건축활동에 대한 감리강화

- 다중(多衆)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사 개인감리의 한계를 감안하여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수준으로 강화
- 일반 건축공사에도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업무의 내용을 구체화
 - 감리보고서 작성·제출 의무화

- 위법·부실공사시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 부여
-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『표준계약서』 작성

2. 건축설계·증개축·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심의 강화

- 다중시설 설계시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을 의무화
 - 현재 16층 또는 기둥사이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만 대상
- 다중시설에 대한 건축허가·용도변경·증개축시에도 자치단체의 건축심의제도를 통한 구조심의를 강화

3. 중·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점검 의무화

- 시장·군수가 정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적용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

4. 민간 자기(自己)공사에 대한 시공자격 제한

-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자기공사라 하더라도 도급공사와 같이 도급한도액을 적용하여 시공능력을 사전에 검증

5. 우량자재 확보 및 건축자재 표준화 추진

- 건축공사에 가장 중요한 레미콘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·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
- 건축자재의 표준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창틀 등 28종의 주요자재의 KS규격을 정비하여 표준자재 사용을 의무화
- 규격자재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『자재정보망』을 구축

6. 부실관련 공증위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

- 95년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시 개별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(1~3년 징역)을 5

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통일

- 그러나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사고를 다스리는데는 미흡

■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 및 안전관련 벌칙을 대폭 상향 조정

- 고의로 공중에 위해를 발생케한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,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- 과실로 인한 공중위해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(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, 사람사상의 경우는 10년 이하(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
7. 건설분야 안전문화 정착운동 전개

■ 건설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자정노력 유도

■ 아파트 불법개조 자체 등 안전을 위한 주민감시운동 전개

■ 건축물 안전여부 『자가진단요령』 마련·배포

- 건축물 단계별 위험조짐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요령을 마련하여 배포

이상 보고드린 대책을 바탕으로 전국 180만 건설인이 앞장서서 앞으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기존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.

엄마처럼 꼼꼼하게 아빠처럼 튼튼하게